

#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수칙을 준수하세요



1

# 만 13세 미만 어린이 탑승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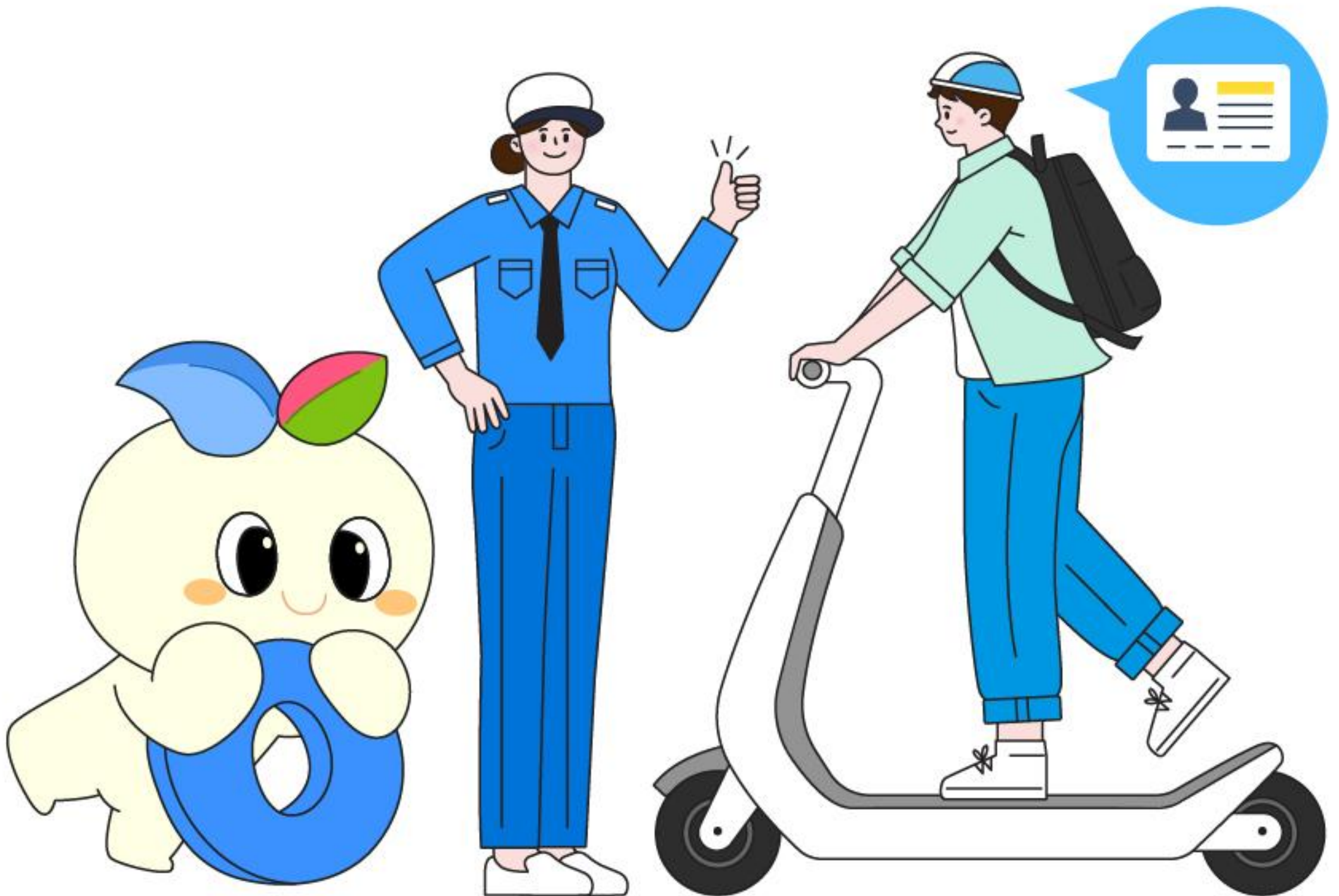
- ✔ 만 13세 미만인 어린이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면 안돼요  
[위반 시 보호자 과태료 10만원 부과]



2

# 원동기 이상 면허 보유

✔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 이상 면허를 보유해야만 이용할 수 있어요 (무면허 운전 시 범칙금 10만원)



3

# 안전모(헬멧) 착용

✔ 부상 예방을 위해 반드시 안전모(헬멧)을 착용해야 해요  
[헬멧 미착용 이용 시 범칙금 2만원]



4

# 두명 이상 탑승 금지

- ✔ 안전을 위해 하나의 기기에는 한 명만 탑승해야 해요  
[2인 이상 탑승 시 범칙금 4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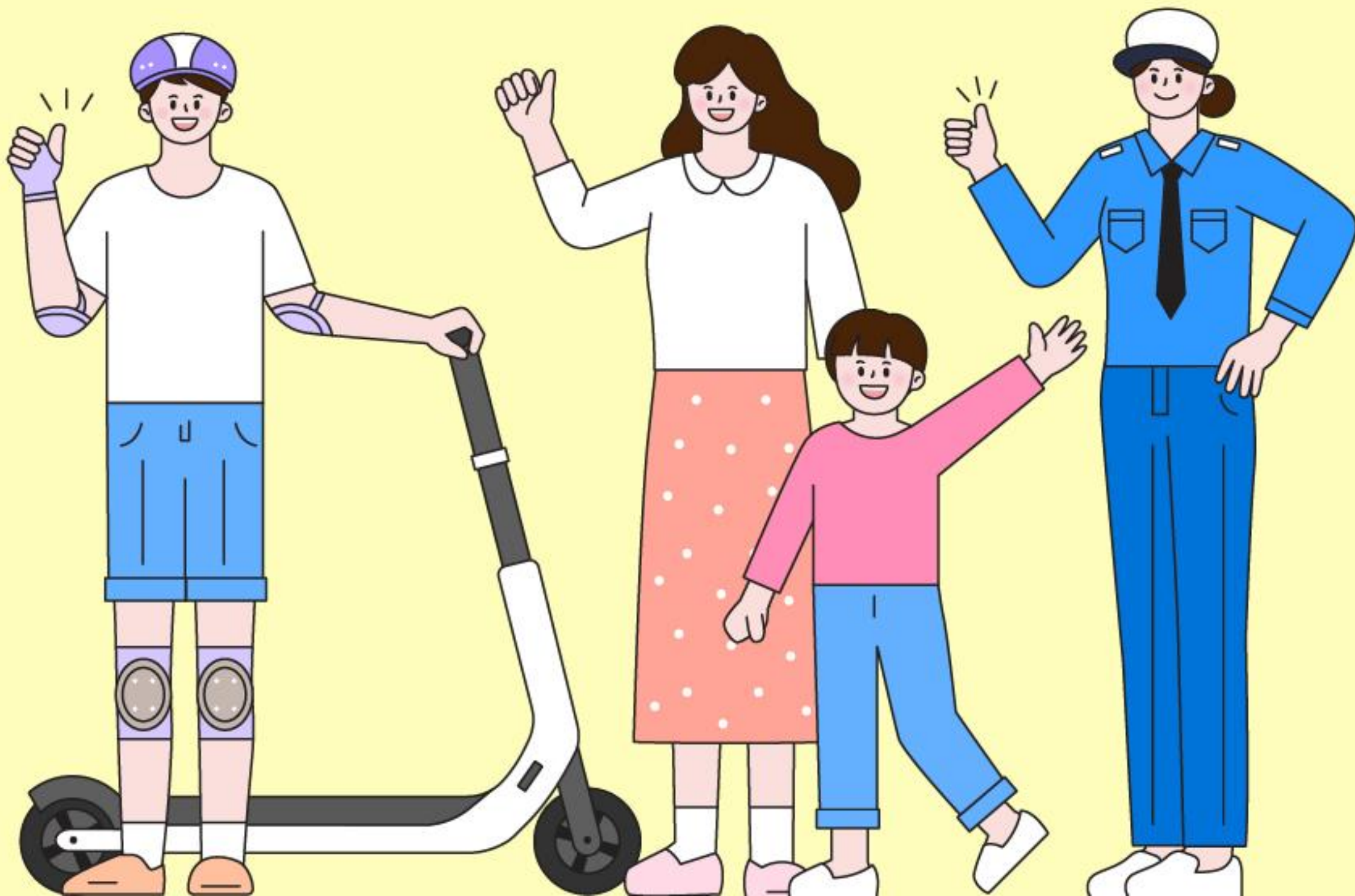
5

# 보도 주행 금지

☑ 보행자 안전을 위해 사람이 다니는 보도에서는 이용할 수 없어요  
[보도 주행 시 범칙금 3만원]



#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수칙 우리 모두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 개인형 이동장치(PM) 위반 시 범칙금 및 과태료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할 때 안전수칙을 위반할 경우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2024년 9월 말까지 집중단속이 진행될 예정이며 주요 위반사항인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2인 이상 탑승, [안전모 미착용](#) 시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구분	단속내용	금액
범칙금	음주운전	단순음주시 10만원 측정불응시 13만원
	약물 영향 등 정상운전 불가시	10만원
	무면허 운전	10만원
	승차 정원(1인) 초과	4만원
	인명보호장구(안전모) 미착용	2만원
	야간 등화장치 미작동	1만원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보행자 보호위반	3만원
	지정차로 위반(상위차로 통행)	1만원
과태료	13세 미만 어린이 운전(보호자 과태료)	10만원
	동승자 안전모 미착용	2만원



출처: 경찰청



전동킥보드도 교통법규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도로에서 전동킥보드를 탈 경우 차선을 지키고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신호등, 횡단보도, 일방통행등의 교통표지도 잘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전동킥보드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 적절한 속도로 운행해야 합니다.

**제27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공제중앙회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1. 피공제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그 밖의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유사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피공제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원인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실질적인 통제행위를 포함한다)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5. 피공제자와 제3자 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따라 가중된 배상책임. 다만,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에 따라 피공제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보상한다.
6. 핵연료 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로 인해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 제6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8.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 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비용
9. 피공제자 및 피공제자의 근로자(학교 교직원을 포함한다)가 학교 업무에 종사 중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배상책임
10. 학교시설의 수리, 개조, 신축 또는 철거공사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다만, 통상적인 유지, 보수 작업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한다.
11. 피공제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 또는 관리(화물의 하역작업을 포함한다)하는 자동차, 항공기, 선박, 원동기장치자전거(개인용 이동장치를 포함한다)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다만, 다음 각 목의 손해는 보상한다.